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지식경제부

◇개정이유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각각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일반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6조의3 신설).
- 나. 변경허가 사항의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7항 및 제6조제1항·제3항).
- 다. 수입가스용품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등록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 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 바.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33조제1항 본문).
- 사.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 최중경

●법률 제107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로 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의3.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6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허가관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관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받을 수 없다”를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가가”를 “허가나 등록이”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6조의3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는"을 "허가나 등록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허가의 취소 등)”을“(허가·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를 각각 “허가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을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가 기준”을 “허가 기준이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조제3항 본문 또는 제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허가관청”을 각각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판매시설”을 “판매시설, 영업소시설”로, “제3조제4항이나 제6조제2항”을 “제3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허가관청”을 각각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설의 시공)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

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3조제4항·제6항, 제6조제3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판매시설”을 “판매시설, 영업소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수입한 자”를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로, “시·도지사”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를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판매 방법)”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판매할”을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품질검사외”를 “품질검사, ”로, “절차”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 등록관청”으로,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 등록관청”으로,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판매”를 “판매·영업소·위탁운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3조와 제6조”를 “제3조·제6조 및 제6조의3”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로 한다.

제34조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판매시설”을 “판매시설·영업소시설·위탁운송시설”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40조 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허가를”을 “허가나 등록을”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허가”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판매시설”을 “판매시설·영업소시설”로 한다.

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4.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44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한 자”를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전단”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제1항 후단”을 “제6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2의3.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제50조제10호 중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를 “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3항 단서,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6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52조제2항제6호 중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품질 검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도시 시장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 구역에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에 따른 대도시 시장의 허가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 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 후단”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